



잠수장비 착용 후 작업 중 사망

해상에서 피해자가 FRP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 하였으나 잠수 후 의식을 잃고 사망



발생 원인

• 작업방법 부적절

- 해상에서 선박이 고장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예인선 등을 불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나 임의로 바다에 입수

• 무자격자 잠수작업 실시

-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잠수사를 투입시켜야 하나 무자격자가 잠수작업 수행

안전작업

TIP

1 작업방법 개선

- 해상에서 선박 고장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선원 직접 바다입수 금지 및 예인선 등을 불러 항구로 예인 후 수리토록 개선

2 유자격자에 의한 잠수작업 실시

- 스쿠버 잠수장비를 사용한 수중작업은 사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잠수사가 실시

3 잠수작업설비의 주기적인 점검

- 잠수작업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·교체 및 점검결과 기록·보존



잠수장비의 점검



유자격자에 의한 작업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(호흡용 공기 등을 사용하는 잠수작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2조 (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)





잠수장비 착용 후 작업 중 사망

선박고장 등 비상상황 시에는 예인선 등을 부르세요!

